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칙

1986년 12월 03일	제 정	2013년 08월 31일	전부개정
1987년 03월 26일	개 정	2014년 10월 07일	개 정
1991년 04월 01일	개 정	2016년 02월 16일	개 정
1998년 11월 04일	개 정	2018년 07월 16일	개 정
2008년 07월 01일	개 정		
2012년 01월 01일	전부개정		
2013년 01월 01일	개 정		

전 문

제1장 총 칙	1~11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12~21
제2절 학생총회	22~29
제3절 학생총투표	30~41
제4절 전체학생대의원회의	42~64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65~79
제6절 비상대책위원회	80~82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통칙	83~84
제2절 총학생회장단	85~90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91~96
제4장 자치기구	
제1절 통칙	97~102
제2절 학과학생회	103~104
제3절 동아리연합회	105~107
제4절 총여학생회	109~109
제5절 생활관자치회	110~112
제6절 무은재 학생회	113~114
제5장 전문기구	
제1절 통칙	116~119
제2절 생각나눔	120
제3절 학생교육위원회	121
제4절 도서관 자치위원회 라온	122
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	123~124
제6장 언론기구	
제1절 통칙	125~131
제2절 교지편집위원회	132
제3절 방송국	133
제7장 협의기구	
제1절 통칙	134~136
제2절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137~138
제8장 특별기구	
제1절 통칙	139~142
제2절 준비위원회	143~145
제3절 총학생회인수위원회	146~150
제9장 선 거	151~158
제10장 재 정	159~169
제11장 회칙 개정	170~174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① 본회는 본교 학사과정 학생들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과외활동을 활성화하며 학생들이 세계적 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① 본교 학사과정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1. 학사 1학기 등록자 :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 학사 2학기 등록자 : 2학기 개강일부터 다음 해 1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② 본교 학사과정 휴학생은 본회의 준회원이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총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준회원이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준회원 중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총학생회 정회원 등록절차를 이행한 자는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 등록기간은 제1항의 기간을 준용하며, 기타 정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근거한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만을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④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⑤ 본회의 활동 참여에 있어 회원에 부여하는 혜택에 정회원과 준회원간의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회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적 관계가 형성될 경우 정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5조【구성】본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협의기구, 특별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2. 집행기구 :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자치기구의 집행기관

3. 자치기구 : 학과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생활관자치회, 무은재 학생회

4. 전문기구 : 생각나눔, 학생교육위원회, 도서관 자치위원회 라온,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

5. 언론기구 : 교지편집위원회, 방송국

6. 협의기구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7. 특별기구

제6조【학교운영참여】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회의 발전과 학생자치의 실현, 그리고 회원의 권익 수호를 위해 대학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원총학생회와의 관계】본회는 본교 대학원총학생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기구 구성원 및 대표자의 책임·의무】①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각 기구의 대표자는 회칙에 근거한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각 기구의 대표자는 직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본회 및 각 기구 내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각 기구의 대표자는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여야만 한다.

④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각 기구의 대표자가 임기 중 휴학할 경우 해당 직위에서 결위된다.

제9조【세칙·규칙·자치규칙·내규】① 본회는 회칙에 따라 하위 규정으로 세칙을 제·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하위 규정으로 규칙을 제·개정한다.

②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의 자치규칙은 규칙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며, 해당 기구의 자치적 일반 사항을 규정한다.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는 자치규칙의 하위 규정으로 내규를 제·개정할 수 있다.

③ 규칙의 제·개정에 관하여서는 해당 규칙의 근거가 되는 세칙의 규정을 따른다. 단, 특정 세칙에 근거를 두지 않는 일반규칙의 제·개정은 「규칙제·개정세칙」을 따른다.

④ 하위규정은 상위규정에 반하여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에 위반한 하위규정의 조항은 효력이 없다.

⑤ 본회의 모든 자치규칙 및 내규의 제·개정 사항은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10조【회칙해석의 원칙과 절차】①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회칙해석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칙해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1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를 준용한다.

③ 회칙해석위원회의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3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이때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회칙 조항과 그 조항의 해석에 관한 각 측의 주장이 공개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적 회칙해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칙해석위원회 의장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전문가 명의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본회의 중요 사항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회칙의 해석의 경우에는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칙해석위원회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의 논의 과정 및 해석 내용을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의 자치규칙·내규의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회칙해석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물관리】① 본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물이 각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 및 각 기구가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모든 기록물을 열람,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④ 공개될 경우 회원의 정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본회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감독·입찰계약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의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⑤ 비공개 자료의 목록은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 자료에 대해 회원의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올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가 자료의 공개 여부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 결과와 주요 사유를 비공개 자료 목록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목록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기타 본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2조【정의】본회의 의결기구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

는 상임기구이다.

제13조【안건】① 본 회칙에서 “안건”이라 함은 의결기구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② 본 회칙에서 “일반의결요건”이라 함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요건을 말한다.

③ 본 회칙에서 “중요의결요건”이라 함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의결요건을 말한다.

제14조【의결기구의 위계】①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② 동일한 내용에 대한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③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상위 의결기구에 상정할 수 있다.

④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의장】① 의장은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의장의 의무】의장은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의장직무대행】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자치기구장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임시의장은 해당 의결기구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시의장의 의장직 수행은 해당 안건의 의사 및 표결에 한한다.

1.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 변경에 관한 안건

2. 기타 의장 개인과 자기관련성이 있는 안건

제18조【특별위원회】의결기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의결기구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회의록】① 의결기구의 모든 의사 및 결정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② 기타 회의록의 작성, 공개,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 및 「기록물관리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참여】① 본회의 회원은 의결기구의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회의진행세칙】기타 학생총투표를 제외한 의결기구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생총회

제22조【지위】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3조【구성】학생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24조【의장의 변경】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학생총회의 경우, 자치기구장 중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상태에서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학생총회가 소집된 경우, 자치기구장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해당 학생총회 개최 직후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25조【소집】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소집요구

2.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제61조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부의

② 소집요구는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소집요구가 없어도 학생총회 의장이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 공고의 일정, 방법 등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개회·의결요건】학생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일반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제27조【안건】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단,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한 안건
2.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회원 200인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제61조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5. 제25조제3항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발의한 긴급한 안건

② 안건발의는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8조【안건 위임】학생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탄핵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개회 준비】① 학생총회의 개회 준비는 집행기구가 담당하여, 중앙집행위원회가 총괄한다.

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대의원은 학생총회의 개회 준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학생총투표

제30조【지위】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1조【투표권】회원은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32조【실시】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실시요구에 의해 학생총회 의장이 실시한다.

제33조【실시 공고】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실시를 실시 일주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학생총투표 실시 일시
2. 학생총투표 투표소 설치 장소
3.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되지 아니한 안건은 학생총투표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제34조【성립의결요건】① 학생총투표는 회원 과반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개표는 학생총투표가 성립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35조【안건 위임】학생총투표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탄핵 안건은 위임할 수 없으며 학생총투표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6조【총투표관리위원회】① 학생총투표 실시가 의결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총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투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생총투표 실시 준비를 보조한다.

④ 기타 총투표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투표 기간】① 투표기간은 2일의 범위 내에서 총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 총투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표기간을 1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투표 방법】①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또는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기타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투표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결과 공고】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종료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총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 및 결과를 공고한다. 이때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하는 최종 투표율은 총 투표용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0조【무효 처리】명부상 총 투표자수와 총 투표용지수의 차이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는 경우에 해당 학생총투표는 무효가 된다.

제41조【준용】기타 학생총투표 관련 세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투표·개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제42조【지위】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 기구이다.

제43조【대의원】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각 학과학생회장
3. 동아리연합회장단
4. 생활관자치회장단
5. 총여학생회장단
6. 무은재 학생회장단
7. 열린 대의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임명하고 해당 기구장이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에게 보고한다. 단, 자치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기구의 대의원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은 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각 소속 자치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뽑힌 대표에 한한다. 단, 대의원이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우, 대의원으로 인정한다.

④ 본회의 운영에 있어 회원의 열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제7호의 열린 대의원을 둔다. 정회원은 「회의 진행세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열린 대의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열린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 총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의원의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대의원이 소속된 각 기구의 자치규칙에 명시된 임기를 준용한다. 단, 제1항제7호의 경우와 자치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기구의 대의원의 경우에는 대의원 인준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⑦ 대의원이 결위인 때에는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⑧ 한 회원이 두 개 이상의 대의원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만약 겸직하게 된 경우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대의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며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단, 대의원 직을 갖게 한 원래의 직이 해임되는 것은 아니다.

⑨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은 재적 대의원의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선출 과정 등이 기재된 명단을 상시 공개하여 본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7호의 열린 대의원 모집과 관련한 사항을 1월, 4월, 7월, 10월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1호, 제7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발언권·의결권을 가진 부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부대표는 각 기구의 자치규칙을 통해 최대 1인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⑫ 제11항의 부대표의 파견은 대표의 청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부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최와 함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제13조의 단서에 따라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제44조【대의원의 의무】①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④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모든 대의원은 상호 동등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

며, 이 과정에서 각종 외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열린 대의원을 제외한 모든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소속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⑥ 열린 대의원을 제외한 모든 대의원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을 자신이 소속된 기구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대의원의 결석·지각·조퇴】① 대의원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가서의 작성은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에서 정한다.

② 대의원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결석·지각·조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유서의 작성은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에서 정한다.

제46조【의장의 변경】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또는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자치기구장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고, 해당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최 직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47조【정기회의】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정기회의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학기 개강 정기회의 : 2월 22일부터 3월 7일 사이에 개최
2. 1학기 종강 정기회의 : 5월 25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개최
3. 2학기 개강 정기회의 : 8월 25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개최
4. 2학기 종강 정기회의 : 11월 24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개최

제48조【비정기회의】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비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2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회원 6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제28조에 따른 학생총회의 안건 위임
5. 제90조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
6. 제170조에 따른 회칙 개정 발의

② 소집요구는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 공고의 일정, 방법 등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9조【긴급회의】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은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집요구 없이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긴급회의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5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서면의결 실시를 의결할 수 있다. 서면의결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0조【자료의 사전 배포】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출된 안건과 그에 관한 설명 및 참고자료가 포함된 자료집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1. 정기회의: 개최 3일 전까지
2. 비정기회의: 개최 2일 전까지
3. 긴급회의: 개최 전까지

제51조【개회 준비】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회 준비는 집행기구가 담당하며, 중앙집행위원회가 총괄한다.

② 중앙운영위원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회 준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개회 의결요건】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일반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단, 중요한결의요건을 따르는 안건의 경우 제13조의 의결요건을 준용한다.

제53조【안건】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단,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3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가 발의한 안건
2.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건

3. 회원 40인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건
4. 제4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된 안건
5. 제28조에 따라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안건
6. 제90조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 안건
7. 제170조에 따라 발의된 회칙 개정안
8. 제49조에 따라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이 발의한 긴급한 사안에 따른 안건
9. 제86조제10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발의한 안건
10. 제127조제4항에 따라 발의된 언론기구 예산안 심의 안건

② 안건발의는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③ 중요의결요건에 따르는 안건은 제54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60조, 제61조, 제62조제1항이다. 단, 제54조제1항, 제61조, 제62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서만 의결이 가능하다.

제54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회칙·세칙에 반하는 규칙·자치규칙·내규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5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학생총회 소집요구 및 제32조의 학생총투표 실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56조【결정·집행·정책 등에 관한 사항】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협의기구, 특별기구의 결정 및 집행 사항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제57조【재정에 관한 사항】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예산안을 인준한다.

② 제출된 결산보고서·예산안 중 문제가 있는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해당 기구에 일정 기간 재정을 배분하지 않거나 배분을 보류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배분이 보류된 경우, 해당 기구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산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권고안이 반영된 수정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승인된 때에만 재정을 배분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③ 자치기구의 독립 재정에 관하여서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를 따른다.

④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제164조에 의해 중앙운영위원회가 편성한 경영예산을 정기회의에서 사후 인준한다. 단, 경영예산의 편성 내용에 현저한 문제가 있어 경영예산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인준되지 못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하여서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⑤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의결할 수 있다.

⑥ 특별기구의 재정에 관하여서는 신속한 활동을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이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사후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58조【독립 재정에 관한 사항】제56조에도 불구하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자치기구의 독립재정 집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정 권고안을 의결할 수 있으며, 수정 권고안이 의결된 경우 자치기구는 수정 권고안의 채택 여부를 반드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59조【감사에 관한 사항】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본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협의기구, 특별기구의 사업 전반 및 재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구의 대표자 또는 사업담당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구의 대표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협의기구, 특별기구의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특별위원회의의 한 종류로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감사 활동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우선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 최종 보고한다.

④ 기타 감사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세칙」으로 정한다.

제60조【징계에 관한 사항】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협의기구, 특별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을 위배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공개 경고 및 사과문 게재
2. 예산의 삭감 또는 지급 유보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4. 기구장 및 기구원 해임
5. 학내 봉사 명령

제6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제90조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할 수 있다.

제62조【학교운영참여에 관한 사항】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포항공과대학교 학칙의 개정안을 총학생회장을 통해 대학평의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대학 당국 및 학생단체를 포함한 대학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대학 산하기구에서 본회의 추천을 받아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인준하며, 학생대표위원의 활동을 관리·감독하고,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학생대표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학생대표위원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 주요 활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대의활동에 관한 사항】①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탈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③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64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제18조에 의거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산하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제65조【지위】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임 의결기구이다.

제66조【중앙운영위원】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중앙집행위원 중 3인
3. 학과학생회장 중 2인
4. 동아리연합회장
5. 총여학생회장
6. 생활관자치회장
7. 무은재 학생회장
8. 각 전문기구장

② 중앙운영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이 경우 해당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임기의 시작과 함께 대표 3인을 중앙운영위원으로 지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정된 중앙운영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

④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는 총학생회장단 임기의 시작과 함께 대표 2인을 중앙운영위원으로 지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정된 중앙운영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

⑤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중앙운영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해당 기구는 지체 없이 새로운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으로 지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재적 중앙운영위원의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단을 상시 공개하여 본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

제67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①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중앙운영위원은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상호 동등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종 외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을 자신이 소속된 기구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의장의 변경】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또는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중앙운영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회의를 개최하며, 개최 직후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69조【회의】①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요구

2.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

3.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③ 제2항제1호를 제외한 소집요구는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 공고의 일정, 방법 등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0조【개회·의결요건】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중앙운영위원 일반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세칙, 규칙에 별도의 의결요건이 규정된 안건은 규정된 의결요건을 따른다.

제71조【안건】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단,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제5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재적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언론기구가 발의한 해당 언론기구의 경정예산편성에 관한 안건

4.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건

5.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건

6. 제69조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의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된 안건

7.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의결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위임된 안건

8. 기타 회칙·세칙·규칙에 따른 안건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과정을 통해 발의된 안건을 제외한 안건발의는 「사무관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칙 제·개정안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 제·개정안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일반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규칙제·개정세칙」을 따른다.

제73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회, 학생총투표의 실시에 관한 세부 문제를 논의 및 결정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소집 공고일 전까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재적 대의원 명단을 확정한다. 단, 아직 인준되지 아니한 제4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열린 대의원 지원자는 재적 대의원 명단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정기회의에서 인준되어 임기 중인 열린 대의원만 재적 대의원 명단에 포함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정기회의 소집 공고일부터 제43조제1항제7호의 열린 대의원에 지원한 정

회원의 지원 서류를 사전 심의하며, 형식요건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한 뒤 해당 회의에 보고하여 열린 대의원의 인준을 요청한다.

제74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 및 전문기구의 사업 계획 및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 및 조정한다. 단, 집행기구 및 전문기구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 및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 및 전문기구의 결정 및 집행 사항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제75조【특별기구에 관한 사항】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의 설치를 심의하고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인준을 요청한다. 단, 신속한 특별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설치를 의결하고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76조【재정에 관한 사항】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재정에 대한 결산보고서 및 예산안을 심의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제출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 학과학생회를 제외한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 협의기구,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회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 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운영세칙」을 따른다.

1. 전체학생대의원회의 1학기 개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4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다음 회계연도 1분기의 예산안

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1학기 종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1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당해 회계연도 2분기의 예산안

3. 전체학생대의원회의 2학기 개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2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당해 회계연도 3분기의 예산안

4. 전체학생대의원회의 2학기 종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3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당해 회계연도 4분기의 예산안

③ 학과학생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회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사전 심의한 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상정한다. 이때 학과학생회가 결산보고서 및 예산안을 학과학생회 산하 의결기관에서 아직 승인받지 못 하여 예산안 작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결기관에 상정될 최종안을 제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운영세칙」을 따른다.

1. 전체학생대의원회의 1학기 개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3분기·4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다음 회계연도 1분기·2분기의 예산안

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2학기 개강 정기회의 : 당해 회계연도 1분기·2분기의 결산보고서 및 당해 회계연도 3분기·4분기의 예산안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특정 기구에 대해 본회 재정 배분의 보류를 의결한 경우, 해당 기구가 제출한 수정안을 심의·승인한다.

⑤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64조에 의하여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하며, 이는 추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서 사후 인준되어야 한다.

⑥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7조제6항에 따라 신속한 특별기구의 활동을 위해 특별기구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서 사후 인준되어야 한다.

제77조【학교운영참여에 관한 사항】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대학 산하기구에서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대학 당국에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학생대표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위원 추천사항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대표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각 기구 또는 각 기구장이 대학 당국 및 학생단체를 포함한 대학 산하기구와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전 심의 없이 협의를 진행한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기구, 언론기구가 각종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단, 협의결과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78조【의결제한안건】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탄핵
2. 회칙·세칙 제·개정
3.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실시
4. 대학 당국 및 본회 내외의 단체에 본회 차원의 의사표명
5. 본회 차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6. 징계
7. 기타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제한한 사항

제79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중앙운영위원회는 제18조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

제6절 비상대책위원회

제80조【비상대책위원회】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 24시간 후 구성된다.

1. 총학생회장단 2인 모두가 사퇴 또는 결위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지 않을 경우
2.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지 않을 경우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총학생회장단이 결위인 경우 구성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비상대책위원이 된다.

1. 학과학생회장 중 2인
2. 동아리연합회장
3. 총여학생회장
4. 생활관자치회장
5. 무은재 학생회장
6. 각 전문기구장

④ 제1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시중앙집행위원 중 3인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각 전문기구장을 포함하지 않은 채 개최하고 즉시 각 전문기구장 인준을 심의·의결한다. 인준이 의결된 경우 전문기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며, 동시에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정된다.

제81조【관련 업무】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중앙운영위원회 대신 기능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결위 기간 동안 총학생회장단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80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일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중앙집행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때 기존에 중앙집행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앙집행위원회는 해산하며, 임시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82조【위원장】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때 비상대책위원장의 선출 이전까지의 회의 소집에 관하여서는 중앙운영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회의를 개최하며, 개회 직후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② 제80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제80조제6항의 전문기구장 인준이 완료된 이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통칙

제83조【정의】 집행기구는 본회의 사무와 업무 집행을 위한 상임기구로,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제84조【구성】 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구 또는 기관을 지칭한다.

1. 총학생회장단
2. 중앙집행위원회
3. 각 자치기구의 집행위원회 및 하위 집행기관

제2절 총학생회장단

제85조【지위】 ①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6조【권한】 ①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를 운영한다.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사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③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갖고, 중앙집행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④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⑤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및 집행 사항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⑥ 총학생회장단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하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직속 위원회 및 위원장·위원에 관하여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총학생회장단은 각 기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구의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제반 학교 행정의 문제에 관하여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여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본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 및 대외적 협의, 본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본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제63조에 따라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⑩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별도의 요건 없이 발의할 수 있다.

제87조【의무】 ① 총학생회장단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본회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각종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선출 및 후임 총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8조【선서】 총학생회장단은 임기 중 처음 개최되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회칙을 준수하고 총학생회와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의 정신으로 총학생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총학생회장단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포항공과대학교의 모든 학우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보궐선거로 당선된 총학생회장단의 경우에는 당선이 공고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본다.

제90조【탄핵】①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
 2.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일주일 이내에 전체학생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때, 자치기구장 중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한다.
- 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상황에서 제13조의 단서에 따라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이때, 학생총회 소집, 학생총투표 실시 중 어떤 방식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다.
- ④ 탄핵안은 학생총회의 경우에는 제26조, 학생총투표의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의결한다.
- ⑤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1인을 상대로는 할 수 없다. 단, 2인 중 1인이 사퇴하거나 궐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91조【지위】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로, 본회 산하 기구의 집행을 감독하여 본회 사무 전반을 관리하고 담당한다.

제92조【중앙집행위원】① 총학생회장단은 필요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중앙집행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 중 1인을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장단은 사무·집행에 관한 일부 권한을 중앙집행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3조【국서】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국서를 둘 수 있다. 각 국서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총학생회장단이 정한다.

② 각 국서의 국장 및 국원은 총학생회장단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배정한다.

제94조【업무】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최고집행기구로서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의 진행을 총괄하고, 필요에 따라 집행기구·전문기구·특별기구에 관련된 업무를 분배할 수 있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의 개회·시행을 준비하고, 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사무관리세칙」에 따라 제작한다.

⑤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결산보고서·예산안을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각 기구는 결산보고서·예산안의 수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5조【중앙집행회의】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에 속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집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6조【집행위원장회의·계열회의】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각 기구의 집행위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집행위원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각 기구의 동종 업무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계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자치기구

제1절 통칙

제97조【정의】자치기구는 상시적 대의수렴과 학생사회의 민주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임기구이다.

제98조【의결기관】① 총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자치기구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자치기구는 총회 하위에 기타 상임 의결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 및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99조【회장단】① 자치기구 회장은 해당 자치기구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② 회장은 해당 자치기구의 대표로서 의결기구 및 해당 자치기구의 의결기관에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치기구는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학과학생부회장의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서의 직무 대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회장(단) 선거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⑤ 회장(단)의 업무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00조【집행위원회】① 집행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자치기구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해당 자치기구의 의결기관에 사업 집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01조【재정】① 자치기구의 재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자치기구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본회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2. 자치기구는 대학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기구의 자치권을 존중한다.

3. 자치기구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자체적으로 징수하여 독립 재정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치권을 갖는다.

② 자치기구는 전체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제76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회 일주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자치기구 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출석하여 제76조제2항, 제3항의 예산안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2조【자치규칙·내규】① 자치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자치규칙의 제·개정권은 해당 자치기구 총회에 있다.

② 자치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치기구는 자치규칙의 하위 규정으로 내규를 제·개정할 수 있으며, 내규의 제·개정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기구는 자치규칙 및 내규를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학과학생회

제103조【목적】학과학생회는 각 학과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민주적 자질향상과 자주적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104조【회원】학과학생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 중 각 학과에 소속된 회원 전원으로 한다.

제3절 동아리연합회

제105조【목적】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기준에 따라 인정된 동아리들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자유로운 과외 활동을 위하여 각 동아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106조【구성】①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목적에 따라 등록이 인정된 모든 동아리들로 구성되며 세부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의 회원이 되며 세부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07조【분과】①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② 분과의 구성 및 분과장의 선출, 업무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총여학생회

제108조【목적】총여학생회는 본회 여학생들의 자치기구로, 본회 여학생들의 소통 창구가 되고 이공계 사회에서 양성이 조화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09조【회원】총여학생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 중 여학생 전원으로 한다.

제5절 생활관자치회

제110조【목적】생활관자치회는 본회 회원 중 본교 생활관 입학생들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생활관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11조【회원】생활관자치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 중 본교 생활관 입학생 전원으로 한다.

제112조【동대표】① 생활관자치회는 생활관 각 동의 원활한 관리와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대표를 둔다.

② 동대표의 선출, 업무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생활관자치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무은재 학생회

제113조【목적】무은재 학생회는 본회 회원 중 본교 무은재 학부생들의 자치기구로,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민주적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14조【회원】무은재 학생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 중 본교 무은재 학부생 전원으로 한다.

제115조 삭제

제5장 전문기구

제1절 통칙

제116조【정의】전문기구는 연속성이 필요한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제11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하며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대표로서 의결기구에 해당 전문기구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전문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선출하고 총학생회장이 인준한다.

제118조【재정】① 전문기구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본회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② 전문기구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제7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회 일주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전문기구 위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출석하여 제76조제2항의 예산안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자치규칙·내규】① 전문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② 전문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구는 자치규칙의 하위 규정으로 내규를 제·개정할 수 있으며, 내규의 제·개정에 관하여서는 해당 전문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④ 전문기구는 자치규칙 및 내규를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생각나눔

제120조【목적】생각나눔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임 전문기구이다.

제3절 학생교육위원회

제121조【목적】학생교육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임 전문기구이다.

제4절 도서관 자치위원회 라온

제122조【목적】도서관 자치위원회 라온은 본교 도서관 이용객들의 권익 증진과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 전문기구이다.

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

제123조【목적】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은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 인권 의식에 대한 고취, 인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 전문기구이다.

제124조【권한】①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은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해 총학생회 명의로 학교 당국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은 본회 산하의 모든 회의에 참관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언론기구

제1절 통칙

제125조【정의】언론기구는 회원들에게 본회 내외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제126조【위원장】① 언론기구의 위원장은 언론기구를 대표한다.

② 언론기구 위원장은 언론기구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언론기구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구 위원장은 언론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제127조【권한】① 언론기구는 활동함에 있어 중앙운영위원회의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 언론기구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해 총학생회 명의로 학교 당국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언론기구는 본회 산하의 모든 회의에 참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언론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당 언론기구의 예산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정기회의의 5일 전까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에게 통보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언론기구가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예산안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은 무효가 되며 자동으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해당 예산안 심의 안건이 발의된다.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과 언론기구의 이의제기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128조【의무】① 모든 언론기구 위원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② 모든 언론기구 위원은 취재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③ 모든 언론기구 위원은 보도를 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여 엄정한 객관성을 유

지해야 한다.

④ 모든 언론기구 위원은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 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다.

제129조【징계】① 위원장은 언론기구의 횡령, 허위 사실 유포, 그로 인한 교내 구성원의 명예훼손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만 해임될 수 있다.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60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은 언론기구의 횡령, 허위 사실 유포, 그로 인한 교내 구성원의 명예훼손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만 징계받을 수 있다.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제60조를 준용한다.

제130조【재정】① 언론기구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본회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② 언론기구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제7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언론기구 위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출석하여 제76조제2항의 예산안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자치규칙·내규】① 언론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② 언론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구는 자치규칙의 하위 규정으로 내규를 제·개정할 수 있으며, 내규의 제·개정에 관하여서는 언론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④ 언론기구는 자치규칙 및 내규를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교지편집위원회

제132조【목적】교지편집위원회는 교지 발간 및 상시 언론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 언론기구이다.

제132조의2【명칭】교지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장이라 한다.

제3절 방송국

제133조【목적】방송국은 방송 제작 및 상시 언론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 언론기구이다.

제133조의2【명칭】방송국의 위원장은 국장, 위원은 국원이라 한다.

제7장 협의기구

제1절 통칙

제134조【정의】협의기구는 본회 산하 기구간의 발전적 협의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민주적인 의사 조율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상임기구이다.

제135조【의장】① 협의기구 의장은 해당 협의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② 의장은 호선하며 의장 사고 시 호선으로 직무 대행을 선출한다.

③ 의장은 해당 협의기구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해당 협의기구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 협의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진행세칙」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기구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해당 협의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협의기구의 재적 위원의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단은 상시 공개되어 본회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재적 대의원 명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6조【재정】① 협의기구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본회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② 협의기구는 전체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제7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 개회 일주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협의기구 의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출석하여 제76조제2항의 예산안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제137조【목적】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는 각 학과학생회 간의 상임 협의기구이다.

제138조【구성】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는 각 학과학생회장을 위원으로 둔다.

제8장 특별기구

제1절 통칙

제139조【정의】특별기구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상임 독립기구이다.

제140조【성립 요건】①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한다.

1. 전문적 영역을 갖고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될 때
2. 본회 차원의 포괄적·대외적 사업이 요구될 때
3. 특정 분야에 관련된 범기구적 연합 또는 대표 단체가 요구될 때

② 특별기구의 설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는다. 단, 신속한 특별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설치를 의결하고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141조【제반사항】① 특별기구의 활동 기간, 구성 및 직무범위는 기구의 설치를 의결할 때 함께 정한다.

② 특별기구의 대표로서 해당 특별기구의 집행을 총괄하고 의결기구에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위원장을 둔다.

③ 위원장은 해당 특별기구의 구성권을 가진다. 단, 의결기구는 필요에 따라 구성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기타 제반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따른다.

⑤ 회칙, 세칙,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사항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을 따른다.

제142조【전문기구로의 전환·등록】① 특별기구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임 전문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립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기구가 제140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제출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심의한다.

1. 기구 구성원 명부
2. 소개서
3. 사무계획서
4. 자치규칙
5. 예산안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형식요건의 심의 후 해당 기구의 전문기구 설립안을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제출한다.

④ 제2항제4호의 자치규칙에는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기구 구성원 선발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제출된 전문기구 설립안을 의결한다. 설립이 의결된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⑥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 역시 본조를 적용하여 전문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

⑦ 사전에 특별기구로서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단체 역시 본조를 적용하여 전문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제2절 준비위원회

제143조【목적】준비위원회는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임시기구로서 준비위원회의 종류와 각 준비위원회의 목적은 생각나눔 자치규칙을 따른다.

제144조【위원장】①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대표로서 준비위원회의 업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②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준비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5조【제반사항】기타 제반 사항은 생각나눔 자치규칙을 따르며 생각나눔 자치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준비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3절 총학생회인수위원회

제146조【목적】총학생회인수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특별기구이다.

제147조【위원장】총학생회장 당선인은 총학생회장과 협의하여 총학생회인수위원회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일정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148조【구성】총학생회인수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당선인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며 총학생회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92조, 제93조를 준용한다.

제149조【권한 위임】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총학생회장단과 협의하여 총학생회장단이 일정 권한을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 총학생회장단으로서의 직무를 임기 시작 전에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총학생회장단과 협의하여 총학생회인수위원회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일정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의 의사가 상충할 경우에는 총학생회장단의 의사가 우선하며, 본회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150조【전환】총학생회인수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중앙집행위원회로 전환한다.

제9장 선 거

제151조【총학생회장단 선거】① 총학생회장단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1인이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③ 총학생회장단 후보가 한 조인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고 투표자 총수의 과반인 경우에만 당선인 인정된다.

④ 총학생회장단 후보가 두 조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중 과반수가 투표한 경우에 한해 투표자 4분의 1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최다 득표 후보를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단, 4분의 1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득표순위 상위 두 후보로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을 결정한다.

제152조【시기】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만료 50일 이전에 실시하며,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0일 이전에 선거절차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53조【선거권】① 본회 회원은 모두 선거권을 갖는다. 단, 원활한 선거관리 업무를 위하여 선거인명부를 공고한 이후의 회원 변동사항은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학생의 경우 제155조의 선거인 등록 과정을 거쳐야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다.

제154조【피선거권】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총학생회 정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1. 학사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총학생회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3.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 및 누적 2회 학사경고를 받지 아니한 자
 4.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기간이 만료된 자는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5조【선거인 등록】① 회원 중 재학생의 경우는 자동으로 선거인으로 등록된다.

② 회원 중 휴학생은 별도의 등록 과정을 통해 선거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절차 공고와 함께 선거인 등록절차에 대해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 공고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선거인 등록의 세부 절차는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기구장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기구장 중 1인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단, 학생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집행, 의견 표명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이 그 직을 선거일 50일 전에 사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모두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자치기구의 의결기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관리 권한 위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기구의 선거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7조【보궐선거】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된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단, 잔임 기간이 150일 이내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며 제80조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제158조【선거시행세칙】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재 정

제159조【원칙】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60조【재원】본회 재정의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총학생회비, 본교 교비지원금, 독립 재정,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61조【총학생회비】① 총학생회비는 「재정운용세칙」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학생회비의 조정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다.

제162조【회계연도】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 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4분기 :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163조【예산안】① 예산안은 매 분기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각 기구에서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한다. 이때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각 기구의 예산안을 보고하는 자는

해당 기구의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예산안의 편성 및 확정은 매 분기 시작일 7일 이내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

③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서 본회 자원 중 본교 교비지원금, 기타 수익금과 같이 자원의 총 규모가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의 결산보고서·예산안 등을 참고한 뒤 해당 사실을 명시하고 예산안을 다소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사업별 총액은 최대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본회 전체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 이내의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제57조제2항에 의하여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특정 기구에 일정 기간 재정을 배분하지 않거나 배분을 보류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여러 분기에 걸쳐 집행되는 사업의 경우, 결산시기를 명확히 보고 하여야 한다.

⑦ 세부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의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세부 예산안을 확정 후 집행한다.

제164조【경정예산】① 부득이한 사유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안의 지출을 가감하여야 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② 편성한 경정예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책임 하에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준되어야 한다.

제165조【예산집행】① 예산의 집행은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② 각 기구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집행한 예산 일체를 영수증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각 기구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총무는 기구장으로부터 재정에 관한 일정 권한을 위임받아 각 기구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재정 업무 집행을 위하여 계열회의의 한 종류로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재정 담당자와 각 기구의 동종 업무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재정운용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6조【결산】① 결산보고서는 매 분기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기구장의 책임 하에 각 기구에서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인준된다.

② 제163조제3항의 경우와 같이 예산안이 다소 유동적으로 편성된 경우라 할지라도 결산보고서는 자원의 각 출처를 명시하여 재정의 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인준한 결산보고서를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63조제6항의 경우와 같이 여러 분기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결산이 완료된 분기에 결산 심의를 한다.

제167조【예산자치제】① 회원 스스로 중심이 되는 본회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흥·장려하고 학내 자치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자치제를 시행한다.

② 예산자치제의 신청 대상은 본회 정회원 및 본회 정회원이 소속된 모든 모임·단체로 한다.

③ 예산자치제의 시행을 위하여 본회 재정의 자원 중 일정 비율을 예산자치기금으로 배정하여 별도 관리한다.

④ 예산자치제를 통한 문화행사 및 자치활동 등의 실시·지원 여부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 기타 예산자치제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168조【재정 감사】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각 기구의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정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서는 제59조를 준용한다.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각 기구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의결기구의 구성원은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각 기구에 비치된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기구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 감사 결과는 반드시 의결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은 「사무관리세칙」에 따른다.

제169조【재정운용세칙】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회칙 개정

제170조【발의】회칙 개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2.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3.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발의
4.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제171조【개정안 공고】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신·구문 대비표
3. 제170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72조【의결】① 회칙 개정이 발의된 경우,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의장은 제171조에서 규정한 5일 이상의 공고기간 후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회칙 개정을 심의·의결한다.

② 회칙 개정은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상황에서 제13조의 단서에 따라 중요의결요건에 의해 의결한다.

③ 회칙 개정의 의결의 기타사항은 「회의진행세칙」을 준용한다.

제173조【공포】① 회칙 개정이 의결된 경우, 총장 승인 후 총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한다.

② 회칙의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신·구문 대비표
3. 제170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 개정 찬성 대의원 명단

③ 본조는 세칙 및 규칙의 제·개정에도 준용한다. 이때, 세칙 제정의 공포 시에는 세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 공포하며, 규칙 제정의 공포 시에는 제정의 근거가 되는 세칙별로 규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단, 세칙 및 규칙의 공포에 있어서는 총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4조【규정집】① 본회는 매년 3월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 규정집」을 중앙집행위원회의 책임 하에 편찬·배포한다.

1.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칙
2.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세칙
3.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규칙
4.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의 자치규칙
5.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의 내규
6. 편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칙 개정이 있었던 경우,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② 자치기구, 전문기구, 언론기구는 자치규칙과 내규의 수집 및 규정집의 배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정집에 수록된 사항을 전산화된 형태의 규정 정보로 제공하여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2016.2.16>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본 회칙 시행 전에 본 회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세칙은 본 회칙의 시행일에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규정】 ① 본 회칙 시행 당시의 본회의 각 기구 대표 및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본 회칙 시행 당시에 이미 행해진 본회 차원의 연대단체 가입·탈퇴, 대외적 협의, 총학생회장단 및 본회 집행

기구 차원의 대외활동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부 칙 <2018.7.16.>

제1조【시행일】본 회칙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기구 구성원에 대한 적용례】제43조제1항제6호 및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80조제3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본 회칙 시행 후 최초로 무은재 학생회장단이 선출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은재 학생회 재정에 관한 특례】① 제76조제2항은 무은재 학생회에 한해 본 회칙 시행 후 최초로 무은재 학생회장단이 선출되기 이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칙 시행 후 최초로 무은재 학생회장단이 선출되기 이전까지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무은재 학생회의 결산보고서 및 예산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무은재 학생회 선거에 대한 경과규정】본 회칙 시행 후 최초로 무은재 학생회장단이 선출되기 이전까지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무은재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